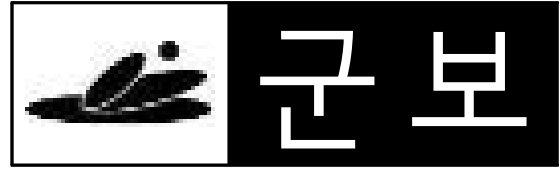


예 산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596호 2020. 10. 23.(금)

고 시

- 예산군 고시 제2020-244호 :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1
- 예산군 고시 제2020-246호 :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4

입법예고

- 예산군 공고 제2020-1617호 : 예산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8
- 예산군 공고 제2020-1626호 :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7
- 예산군 공고 제2020-1632호 :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

회 람									
--------	--	--	--	--	--	--	--	--	--

발행 예 산 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1)

예산군 고시 제2020-24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제24조 제1항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10. 16.

예 산 군 수

○ 도로명주소(신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부여(고시)일	도로명주소부여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변경)

종전주소	도로명주소(변경 전)	도로명주소(변경 후)	도로명주소변경일	변경사유
(별지참조)				

○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폐지)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청 민원봉사과 주소정책팀(☎041-339-7167~9)으로 문의 또는 새 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주소만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사용합니다.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세부내역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신리 321-70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863-35	20201016	신축	20090825	도청이전지를관통하는주도로로지역적특성을반영 하여도청대로로명명	
2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광시리 77-3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예당로 171-8	20201016	누락	20090825	전국규모의 예당저수지 반영	
3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마전리 483-4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차동로 984-34	20201016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공주시 경계에 위치한 고개 이름 사용	
4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외라리 267-2, 267-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로 655-7	20201016	신축	20090825	전국 대표적인 사찰인 수덕사 명칭 활용	
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리 253-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신례원로 209	20201016	누락	20091113	신례원의 중심도로로 행정구역명(신례원)을 이용하여 명명	
6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358-2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역진로 91	20201016	누락	20091113	예산 역전을 통과하는 도로로 지역특색을 반영	
7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장리 467-5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황금뜰로 417-63	20201016	신축	20091113	예산군의 황금들판을 지나는 도로로 지역적 상징을 반영	
8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143-27	충청남도 예산군 봉산면 예덕로 372-15	20201016	신축	20090825	예산군과 당진 합덕읍의 행정구역 명칭 조합	
9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목리 1182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애향11길 8	20201016	누락	20130819	예산군과 홍성군에 위치한 애향공원의 명칭을 이용하여 부여	
10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가지리 379, 379-2, 379-3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가지2길 96-15	20201016	누락	20091113	지형이 가지처럼 생겨 유래된 자연마을이름 반영	
11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두곡리 32-13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계촌2길 79-42	20201016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계촌리)를 이용하여 명명	
12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녹문리 401	충청남도 예산군 신양면 녹문노루목길 20-8	20201016	신축	20100315	행정구역명(녹문리)과 고유지명(노루목)을 이용하여 명명	
13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 752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사리서길 78-3	20201016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사리)와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1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송석리 44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송석월곡길 36-3	20201016	신축	20091113	응봉면 송석리와 오가면 월곡리를 연결하는 도로로 행정구역명을 이용하여 명명	
15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482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부흥길 23	20201016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시량리)과 고유지명(부흥)을 이용하여 명명	

NO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일(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6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167-1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시량부흥길 12	20201016	신축	20091113	행정구역명(시량리)과 고유지명(부흥)을 이용하여 명명	
17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신가리 261-2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신가동길 15-13	20201016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신가리)과 방위를 이용하여 명명	
18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리 96-12	충청남도 예산군 신암면 신종여사울길 29	20201016	누락	20100315	행정구역(신종리) 및 지형지물(여사울성지)을 이용하여 명명	
19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장복리 534-1, 533-1, 534-2, 534-4, 534-5, 606-18, 606-39	충청남도 예산군 대술면 장복국화동길 68	20201016	누락	20091113	행정구역명(장복)과 국화가 많다하여 불려진 고유지명 국화동을 반영	
20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주령리 406-1	충청남도 예산군 응봉면 산단1길 78	20201016	신축	20131106	예산군 일반산업단지내 도로로 주소의 일관성 유지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순차적으로 부여	

도로명주소 변경고시 세부내역

NO	변경전 도로명주소	변경후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일	도로명주소 변경사유	비고
1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두리별리길 111-4	충청남도 예산군 삼교읍 두리별리길 111	20201012	소유주 신청에 의한 건물번호분할	

예산군 고시 제 2020-246호

국가기초구역 열람 공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8 제3항 및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코자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주민 및 지방 관련기관에서는 붙임 의견서 양식에 따라 2020. 11. 3.까지 예산군 민원봉사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예산군수

1. 국가기초구역 개요

- 기초구역 도입배경
통계·우편 등 각 기관별 구역 설정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통계 등의 정보 공유 및 안정적인 구역관리가 곤란하여 국가 내에 공통 사용 가능한 전국단위 구역관리제도가 필요
- 기초구역 정의
도로명주소를 기반으로 국토를 읍·면·동의 면적보다 작게 일정한 경계를 정하여 나눈 구역
- 기초구역 활용범위
통계·우편 등 각 기관의 개별 관할구역을 기초구역으로 재설정하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민간 물류분야 및 상권분석 등의 기준구역으로 활용

2.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

시군구명	국가기초구역 할당 수	국가기초구역 수	예비번호 수
예산군	100	58	42 (32400~32499)

※ 국가기초구역 설정현황과 도로명주소 정보 등은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따로 출력(종이), 비치하며 일반인에게 열람합니다.

3. 국가기초구역 고시 예정 : 2020. 12.

4. 문의

예산군 민원봉사과 (☎041-339-7167~9)

《별지 1호 서식》 국가기초구역 전국 동시 고시지침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관련기관 의견서

(일련번호 :)

의견제출 기관정보			
관련기관/ 부서명	/		
담당업무/ 성명	/		
연락처/ E-mail	/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의견			
시·도명	충청남도	시·군·구명	예산군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수정요청사유			
설정안 의견			
기존	변경 의견		

※ 도면은 홈페이지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파일에 첨부하도록 하며 일련번호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합니다.

2020년 월 일

《별지 4호 서식》 국가기초구역 전국 동시 고시지침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주민 의견서

(일련번호 :)

의견 제출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년 월 일
주소			
연락처			
E-mail			
의견이 있는 국가기초구역			
시·도명	충청남도		
시·군·구명	예산군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수정요청 사유			
설정안 의견			
설정안 도면			

※ 설정안 도면은 별도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일련번호는 시군구에서 작성합니다.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며 본 의견제출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조항에 따라 귀 기관에서의 심의결과 통보에 필요한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예산군수 귀하

《별지 6호 서식》 의견제출 양식

국가기초구역 설정에 대한 변경 검토 의견서

(일련번호 :)

국가기초구역 설정(안)에 대한 의견			
시·도명	충청남도	시·군·구명	예산군
구역번호			
국가기초구역 수정사유			
설정안 의견			
기존		변경 의견	

※ 도면은 홈페이지 등의 화면을 캡처하여 파일에 첨부하도록 하며 일련번호는 접수기관에서 부여합니다.

2020년 월 일

예산군 공고 제2020-1617호

예산군 귀농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귀농인 지원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2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도시지역에서 예산군으로 이주하거나 이주 예정인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해 귀농·귀촌인의 정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불합리한 지방규제에 해당하는 조문을 개정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홍보사업 추진근거 마련으로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 「예산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

나. 귀농·귀촌 활성화 홍보사업 신설 (안 제4조)

- 홍보물품 제작 배포 및 비대면 홍보사업 추진 근거 마련
- 다.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신설 (안 제7조)
- 지역주민 프로그램 및 교류협력을 위한 집들이 사업 등
- 라. 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안 제8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있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농업기술센터(참조 : 귀농지원팀 ☎ 041-339-8151, FAX : 041-339-8159)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0. 10. 22. ~ 2020. 11. 11.(20일간)
-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라. 의견제출할 곳
 - 우편발송 : 충남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52, 예산군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우편번호 32418)
 - 전자메일 : speed011@korea.kr
 - 기타 문의 관련 : ☎(041)339-8151, fax : (041)339-8159

※ 붙임 1.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군에 전입하는 귀농·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3.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어업인을 말한다.
4.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귀촌인을 말한다.
5.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이란 법 제7조 제1항 후단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

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귀촌 활성화 홍보 사업) ① 군수는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학용품, 주방용품, 사무용품, 생활용품 등의 홍보물품을 제작 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비대면 귀농·귀촌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통한 농·특산물 알리기 등 다양한 이벤트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퀴즈 응모자에 대하여 지역농산물을 배포할 수 있다.

제5조(귀농·귀촌인 등록) ① 귀농인, 귀촌인 및 귀농인에 준하는 사람(이하 “귀농인 등”이라 한다)으로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사람에 대하여 신청자격을 확인하고 귀농인 등으로 등록·관리한다.

제6조(귀농인 등 지원사업) 군수는 귀농인 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에 필요한 기술 및 정보제공
2. 귀농인 등의 영농 기술교육
3. 귀농인 등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
4. 예비 귀농인 유치에 필요한 사업
5. 귀농인 주택 수리비 지원
6.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지원
7. 귀농인 등의 선도농가 현장 실습교육비 지원
8. 귀농인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경영컨설팅 지원

9. 우수 귀농인 등의 영농에 필요한 사업 지원

10.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사업 지원) 군수는 귀농인 등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2. 귀농인 등과 지역주민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집들이 사업
3. 그 밖에 귀농인 등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

제8조(법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귀농인 등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2. 귀농·귀촌인의 교육 및 컨설팅
3.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군수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귀농인 등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

하지 아니한 때

3. 농업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인 등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귀농·귀촌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귀농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지원 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
2.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
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인 유치 지원 홍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귀농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농정유통과장, 산림축산과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 가. 농업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 나. 귀농에 관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 다. 농업인 단체장 및 생산자 단체장

라. 귀농·귀촌단체 관계자

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위촉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귀농·귀촌인 등록 신청서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귀농 후			핸드폰	
				E-mail	
전입일		귀농 전 직업		경영체 등록여부	
영농경력	년	교육이수	연도	교육과정명	교육기관명
가족상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주 작 목 :		- 농지규모 :	m ²	
	- 저장시설 :		- 사육두(마리)수 :		
	- 농 기 계 :		- 시설규모(하우스 등) :	m ²	
<p>귀농·귀촌인 등록 신청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여 이용함을 알려드립니다.</p> <p>1. 수집 및 이용 목적 : 귀농인 등 신청자격 확인, 사업대상자 선정 및 등록 관리</p> <p>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이메일, 휴대폰, 귀농 전 및 귀농 후 주소, 교육이수, 가족상황, 주거상태, 영농규모 등</p> <p>3. 보유 및 이용기간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상환완료까지(최대 15년)</p> <p>4.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각 호 사항을 고지 받고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 합니다. 동의 <input type="checkbox"/> 비동의 <input type="checkbox"/></p>					
예산군수 귀하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본인은 위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귀농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예산군 공고 제2020 - 1626호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일
예산군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권고 사항을 이행하여,
- 연구과제 선정절차 확립, 관리체계 정비, 연구결과 공개 확대 등을 통해 연구용역의 공정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공고문 참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군민 또는 단체는 2020년 1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군수(기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32435 충청남도 예산군 군청로 22, 기획담당관

○ 전 화 : 041)339-7104, FAX 041)339-7109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ojwook0502@korea.kr),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 문 의 처 : 예산군청청 기획담당관(전화 : 041-339-7104)

붙임 :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예산군 공고 제2020 - 1626호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3분의 1”을 “과반수”로 한다.

제10조 및 제1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결과의 공개)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 시스템(PRISM)과 군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등록·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알려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공고 제2020- 1632 호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23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제안이유

-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의거, 가축사육 제한구역(전부 또는 일부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경계 지역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이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또는 전부 제한구역,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등) 지정 및 예외조항 실설(제3조, 제4조, 제5조)
- 기존 배출시설의 증설 및 축종 변경(제6조)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 예산군 환경과, 주소 :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22(6층), 우편번호 : 32435)에게 서면이나 메일(ots011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0. 10. 23. ~ 2020. 11. 13.(21일간)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환경과 환경지도팀

【☎(041)339-7513】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붙임 1. 예산군 가축 사육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붙임 1]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5호 이상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하고,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
3.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고 한다)과 인접한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군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5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 하고, 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 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존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이하 “건축”이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까지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을 말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사육하는 경우
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4.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 하여 사육하는 경우
5.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와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 는 경우
6. 공공기관, 동·식물원, 공원 등 시설의 방문자에게 관람 또는 체험용으로 사 육하는 경우
7.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 화장 내에 부설한 계류장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8.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중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 미만의 면적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제6조(기존 배출시설 건축 제한 등의 예외)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종변경 및 건축제한의 예외로 한다.

1. 별표 3에 따른 축종별 악취 등급이 낮은 등급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2. 생활악취 및 환경오염이 현저히 줄도록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대하여 악취저감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개선 및 동물복지사업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각 목의 경우. 다만, 나목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

가. 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개축·재축하는 경우

나. 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증가되게 신축·증축하는 경우

3. 화재, 천재지변 등 재해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같은 부지에서 개축·재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표 1]

가축사육 제한구역(제3조제1항 관련)

구	분	제	한	구	역
전 부 제한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도시지역)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수도법 제7조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70조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			
	하천법 제2조	국가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예당저수지 경계로부터 500m이내 지역			
일 부 제한구역	전부제한구역 이외의 구역	○ 관광지 및 관광특구지역 경계선과 주거밀집지 역 내 주택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소, 젓소, 말, 양, 사슴, 염소, 산양 : 500m 이하지역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하지역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 지방자치단체 부지경계선으로부터 가까운 직선 거리로 하며, ○ 제한 거리 - 소, 젓소, 말, 양, 사슴, 염소, 산양 : 600m 이하지역 -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 1,500m 이하지역			
	내포신도시주변지역 (삼교읍,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 중 삼교천과 내포신도시 사이 지역	○ 주거밀집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법 제 2조제1호 가축의 사육시설 : 600m이내			

[별표 2]

제한구역 내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제5조제1호 관련)

1. 전부 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축 종	사육두수
개	3마리 이하
닭, 오리, 메추리	5수 이하

2. 일부 제한구역 사육가능 축종 및 두수

축 종	사육두수
소, 젓소, 말, 개, 돼지, 사슴, 양, 염소, 산양	5마리 이하
닭, 오리, 메추리	20 수 이하

[별표 3]

축종별 악취 등급 (제6조제1호 관련)

등 급	축종	비 고
1등급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1등급에서 2등급으로만 축종 변경 가능 (단, 소와 젖소는 축종 변경가능)
2등급	소, 젖소, 말, 사슴, 양, 염소	

[별표 4]

기존 배출시설 건축 허용 기준

(제6조제2호제나목 관련)

1. 2015년 12월 23일 이전의 허가(신고)된 배출시설에 한하여 1회로 한정한다.
2. 배출시설의 면적이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가되게 신축·증축하는 경우에도 증가되는 면적이 8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
3. 내포신도시(삼교읍 목리·신리·이리·수촌리 전 지역)은 제외한다.

[붙임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성	반대		